

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

심사보고서

2026. 3.

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6년 2월 9일, 정태호의원 등 21인

나. 회부일자: 2026년 2월 13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:

제432회 국회(임시회) 폐회중

제3차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(2026.3.4.) 상정, 제
안설명, 검토보고, 대체토론, 소위원회부

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(2026.3.4.) 상정, 축조심사

제433회 국회(임시회)

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(2026.3.5.) 상정, 축조심사

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(2026.3.9.) 상정, 축조심사, 의결(대안반영
폐기)

제4차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(2026.3.9.) 상정, 소
위심사보고, 축조심사, 의결(대안반영폐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정태호의원)

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 「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」(이하 “양해각서”라 함)를 체결하여 조선·반도체·의약품·핵심광물·에너지·인공지능·양자컴퓨팅 등 미래 전략산업 분야에서 공급망 협력 및 상호투자 확대를 추진하기로 하였음.

양해각서는 총 2,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적 투자와 1,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분야 협력 투자를 포함하고 있어 국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, 첨단기술 공급망 안정, 해외 진출 기반 확대 등 국가경제 전반에 걸쳐 중장기적으로 큰 파급효과가 예상된다.

이러한 대규모 전략적 투자를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전담기관 설치, 상업적 합리성을 기반으로 한 투자원칙 확립, 미국 정부와의 협의 구조 제도화, 국회에 대한 보고·통제 장치 마련 등 체계적인 법적 기반이 필요함.

이에 한미전략투자공사와 한미전략투자기금을 한시적으로 설치하여 전략적 투자를 안정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고, 투자 전 과정에서 상업적 합리성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안보 및 공급망 안정 필요성을 고려한 예외 규정을 마련하며, 국회 보고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를 확보하고자 함.

아울러 책임·감독 체계를 정비하여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고, 전

략적투자가 양국 산업협력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검토보고서 참조.

4. 대체토론의 요지

(대미투자의 국익 관련)

- 대미투자는 국익에 부합하도록 추진되어야 하고, 대한민국 기업이 대미투자에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
- 산업부장관은 한미 협의위원회에서 대한민국 국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음.
- 대미투자는 한미산업동맹 강화 및 글로벌공급망 확보에 기여하며, 정부는 대미투자의 성과가 국내로 환류되도록 투자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.

(전략적투자 추진 체계 관련)

- 운영위원회 및 사업관리위원회 이원화 구조에 따라 책임 분산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.

(국회의 전략적투자 통제 관련)

- 개별 전략적투자에 대하여 국회 사전 보고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.
- 30억불 이상의 전략적투자는 국회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을 필요

가 있음.

- 전략적투자자에 대한 국회 동의 규정은 리스크 헷지 기능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.
- 전략적투자 보고 주체를 정부로 일원화하고, 전략적투자의 경제 영향평가 및 재원조달 방안을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음.

(한미전략투자공사 신설 관련)

-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신설하여 공사에서 인프라 투자 등을 전담할 필요가 있으며, 향후 국부펀드 운용도 담당할 수 있도록 공사를 확장할 필요가 있음.
- 한국투자공사는 외환보유고를 운용하는 기관이므로 투자에 적합하지 않고, 수출입은행은 BIS 비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으며, 무역보험공사는 보증만 진행할 수 있으므로, 한국전략투자공사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.
- 한미전략투자공사는 기존 조직에서 파견을 받아 운영함에 따라 책임이 분산되고, 옥상옥 기관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음.

5. 소위원회 심사내용

(소위원장 정태호)

김병기의원·홍기원의원·진성준의원·박성훈의원·안도걸의원·정일영의원·박수영의원·김건의원·정태호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심사한 결과, 이상 9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·조정하여 위

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6. 찬반토론의 요지

없음

7. 심사결과

대안반영폐기